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엄샛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46

발의일자 : 2023. 5. 31.
발 의 자 : 엄샛별, 도병두, 윤영희, 이인식 의원(4명)

1.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에 그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또한 전체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어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협조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정책 수립 및 조례 제·개정 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에서 제12조).

사.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5조, 제7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6. 1. ~ 6.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인구영향평가”란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협조) 주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 지원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2. 양육·돌봄·교육 지원
3. 다자녀가정 우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
4. 일자리 창출·주거안정 지원
5. 고령자 건강증진 및 노후여가·사회활동 장려 지원

제8조(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 수립 및 시행,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 · 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